

2020. 6. 18. 10:00

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출일자 : 2020년 6월 12일

3. 제출이유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결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037,355	1,092,200	805,643	286,557	102,241	38,294	3,882	7,441	134,699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수납액 1조 922억 2천원 중 8천 56억 4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천 865억 5천 7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천 22억 4천 1백만원, 사고이월이 382억 9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이 38억 8천 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4억 4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 346억 9천 9백만원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1,027,955	1,102,327	1,082,934	1,696	17,698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279억 5천 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천 23억 2천 7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의 98.2%인 1조 829억 3천 4백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이 16억 9천 6백만원,
 미수납액이 176억 9천 8백만원임.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837,600	190,355	1,027,955	804,497	144,905	7,396	71,157

- 일반회계 예산액은 8천 376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천 903억 5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9억 5천 5백만원임.
 그 중 지출액은 8천 44억 9천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천 449억 5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9천 6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1억 5천 7백만원임.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9,400	9,268	9,267	0	1

-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4억원임.
 징수결정액은 92억 6천 8백만원으로
 이중에서 92억 6천 7백만원을 수납하고 1백만원은 미수납됨.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 특별회계	9,400	9,400	1,146	0	3	8,250

-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4억원임.
 그 중 지출액은 11억 4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백만원을 제외한
 82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임.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계	488	144,904	‘상리어린이공원조성’ 등 488건
일 반 회 계	명 시 이 월	340	102,728	
	사 고 이 월	145	38,294	
	계 속 비 이 월	3	3,882	
특 별 회 계	명 시 이 월	0	0	
	사 고 이 월	0	0	

- 명시이월 340건에 1천 27억 2천 8백만원,
 사고이월 145건에 382억 9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38억 86천 2백만원
 전체 488건에 1천 449억 4백만원이 이월됨.

6.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 성 액
		조성액	사용액	
계	10,100	38,358	390	48,069
재정안정화기금	0	36,300	0	36,300
재난관리기금	8,331	1,487	188	9,629
자활기금	842	109	110	841
식품진흥기금	765	11	12	764
재난관리기금	0	400	0	400
체육진흥기금	163	51	79	134

- 현재 6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83억 5천 8백만원을 조성하고,
 3억 9천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0억 6천 9백만원임.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4,268	372	589	4,051
일반회계	4,127	272	559	3,840
특별회계	1	0	0	1
기 금	140	100	30	210

-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2억 6천 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7천 2백만원이 발생하고
 5억 8천 9백만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40억 5천 1백만원임.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계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며
 현재액은 0원임.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1,942,778	126,456	6,627	2,062,607
행 정 재 산	1,927,501	126,322	5,931	2,047,893
일 반 재 산	15,277	134	697	14,714

-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9천 427억 7천 8백만원에서
1천 198억 2천 9백만원 증가한
2조 626억 7백만원임.
증가내역은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 비슬산 관광지 조성사업,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임.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해당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838	8,742	120	1,828	20	70	938	10,500

- 전년도말 현재액 838건 87억 4천 2백만원에서
120건, 18억 2천 8백만원 취득하고, 20건, 7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938건에 105억원임.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일반 승용차, 승용전기자동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8. 금고의 결산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천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092,200,219	805,642,841	286,557,378
일 반 회 계	1,082,933,501	804,496,510	278,436,991
기타특별회계	9,266,718	1,146,331	8,120,387

○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이 1조 922억 21만 9천원이고
세출은 8천 56억 4천 284만 1천원으로
잔액이 2천 865억 5천 737만 8천원임.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996,558	1,414,630	14,841,953	13,400,323	2,411,188

○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9천 655만 8천원이고
148억 4천 195만 3천원이 증가하고
134억 32만 3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억 1천 118만 8천원임.
군 금고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의 금액과 일치함.

9. 분야별 총평

1)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분석

□ 세출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B/A	C/A	D/A
계	1,027,955	804,497	144,905	71,157	78.3	14.1	6.9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487백만원)포함, 집행잔액에는 보조금반납금(7,396백만원)미포함

□ 전년도 대비 집행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027,955	804,497	78.3	946,851	680,777	71.9	865,488	587,020	67.8

□ 검토의견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과 집행액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예산액은 8.6%, 집행액은 18.2%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78.3%, 이월율은 14%, 불용율 6.9%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 보다는 높았지만 예산현액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 사업과 이월예산 대부분이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조사, 사업의 타당성 조사강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집행을 제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됨.

2) 이월예산 및 예산불용액 최소화 노력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비 율
명시이월	488	144,904	539	190,029	-51	-45,125	-23.7
사고이월	340	102,728	346	122,841	-6	-20,113	-16.4
계속비이월	145	38,294	191	65,826	-46	-27,532	-41.8
계	3	3,882	2	1,362	1	2,520	185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금액이 각각 6건 및 201억 3천 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6건에 275억 3천 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 1건에 25억 2천만원 증가함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이월예산현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18년	비 고
예산현액(A)	1,027,955	946,851	
세출결산액	804,497	680,777	
이월액(B)	144,417	190,029	
비 율(B/A)	14	20.1	

□ 검토의견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예산은 전년대비 23.7% 줄어들었고,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도 전년도 대비 6% 감소되어 일정부분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미추진, 사업 포기 등 불용사유별로 적게는 5.1%에서 100%까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다수 있음.

이월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3) 보조사업 집행절차

□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황

2019년 회계연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A)	2018년 (B)	2017년 (C)	전년대비 증감율(%)	
				A/B	C/B
수령액 (D)	296,491	234,321	207,387	26.5	13.0
반납액 (E)	7,441	4,388	4,004	69.6	9.6
E/D(%)	2.5	1.9	1.9	-	-

보조금 수령액이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나 수령액 반납금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요조사와 수혜자 예측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출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계획액	1,069,340	1,613,337	1,906,140	
	지출액	135,680	437,267	389,608	
자활기금	계획액	102,000	70,000	110,000	
	지출액	42,000	60,000	110,000	
	비 율	41	86	100	
식품진흥기금	계획액	77,340	95,337	146,140	
	지출액	65,680	79,444	79,295	
	비 율	85	83	54	
재난관리기금	계획액	880,000	1,418,000	1,630,000	
	지출액	23,300	277,424	188,348	
	비 율	3	20	12	
체육진흥기금	계획액	10,000	30,000	20,000	
	지출액	4,700	20,400	11,964	
	비 율	47	68	60	

※ 재무활동(예치금 등) 제외, 예치금으로만 구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제외

각종 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대비 지출액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집행 비율의 편차가 심하며 특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연도별 지출액 간 편차가 큰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평소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비율이 낮은 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을 줄이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계획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수입계획액을 조정하거나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10. 개선 및 권고사항

1) 건설도시사업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 철저

□ 미추진 및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출내역				불용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632,473	11,772,977	1,046,280	10,813,216	
소 계 (미추진 사업)		1,008,389	1,774	2,500	1,004,115	
건설과	다사 매곡1리 마을회관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608,389	1,774	2,500	604,115	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사업 취소
	현풍 중1리(달성경찰서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	-	200,000	민원에 따른 도시 계획도로 노선 재검토
	가창 상원리 508번지선 도로확장	200,000	-	-	200,000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 불가
소 계 (집행잔액 과다)		12,479,616	7,894,217	0	4,585,399	
건설과	화원 성산리(연세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75,833	84,906	-	490,927	사업구간 조정 보험료 등 정산잔액
	화원 명곡지구 외 7개소 도로사면정비	402,000	278,432	-	123,568	사업구간 조정 보험료 등 정산잔액
	논공 상리 공단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704,695	471,605	-	233,090	보험료 등 정산잔액
	논공 북1리(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649,213	548,809	-	100,404	보험료 등 정산잔액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410,416	170,853	-	239,563	보험료 등 정산잔액
	다사 매곡리 주민자치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692,708	533,797	-	158,911	보험료 등 정산잔액
	유가 음리 노후도로 측구정비	360,000	155,762	-	204,238	사업구간 조정 보험료 등 정산잔액
	현풍 오산~원교간(군도1호선) 도로 선형 개량	792,258	178,871	-	613,387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선투자분 불용
	가창 내주리(마을회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419,035	248,570	-	170,465	설계변경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
	가창 삼산~우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44,325	-	155,675	보험료 등 정산잔액
	가창 오2리(19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20,263	198,726	-	121,537	보험료 등 정산잔액
	가창 냉천리 240번지선 교량확장	250,000	69,739	-	180,261	사업구간 조정 보험료 등 정산잔액
	하빈 현내3리(하빈농협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711,175	545,040	-	166,135	설계변경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

부 서	사 업 명	지출내역				불용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안전 방재과	가창 행정리 흥덕소하천 정비공사	796,391	536,033	-	260,358	국비 자연에 따른 군비 전투자분 불용
	하빈지구(하산~동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745,629	3,611,416	-	1,134,213	국비 자연에 따른 군비 전투자분 불용
도시 정비과	가뭄대책 관리	150,000	45,277	-	104,723	집행잔액
	농로 및 용수로 유지보수	300,000	172,056	-	127,944	집행잔액
소 계 (보상협의 지연)		10,144,468	3,876,986	1,043,780	5,223,702	
건설과	화원 성산1리(광법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495,370	118,140	238,560	138,670	보상 협의 지연
	화원 설화리(990-12번지선) 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	101,110	-	-	101,110	미보상 금액
	논공 금포2리 금포초등길 도로확장	181,982	29,603	-	152,379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다사 서재본길 인도설치	308,278	176,013	-	132,265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다사 서재리 선진섬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292,593	714,533	-	578,060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다사 서재리(595번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16,976	99,061	-	317,915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유가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79,333	251,218	-	128,115	보상 협의 지연
	유가 리도 207호선 개설	613,586	398,512	-	215,074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유가 한정1리(413번지선) 도로확장	757,848	581,629	-	176,219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6,536	179,065	200,000	327,471	보상 협의 지연
	옥포 신당리(신당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531,127	-	168,873	보상 협의 지연
	옥포 교항1리 교항5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17,000	329,886	-	187,114	보상 협의 지연
	현풍 성하2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237	62,795	50,000	237,442	보상 협의 지연
	가창 우록리 101-1번지선 도로정비	1,089,081	8,931	100,000	980,150	토지보상 미협의로 공사계획변경
	하빈 감문1리(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62,630	-	142,630	120,000	보상 협의 지연

부서	사업명	지출내역				불용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도시 정비과	논공 위천리 (263-6번지선) 농로확장공사	179,885	0	72,202	107,683	보상 협의 지연
	가창 냉천리 (503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130,986	-	-	130,986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가창 냉천리 (66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102,634	-	-	102,634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가창 상원리 (36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165,069	-	19,210	145,859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가창 대일1리 (470번지선 외 2개소) 농로개설공사	324,778	1,282	170,000	153,496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도시 정비과	가창 우록리 (362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193,325	40,742	35,926	116,657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가창 우록2리 (819번지선 외 3개소) 농로개설공사	314,760	122,845	-	191,915	보상 협의 지연
	가창 단산리 (315번지선) 농로 확포장공사	197,446	15,664	15,252	166,530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하빈 봉촌1리 (11-1번지선 외 3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63,025	215,940	-	147,085	보상 협의 지연
	가창 우록리 (362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193,325	40,742	35,926	116,657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가창 우록2리 (819번지선 외 3개소) 농로개설공사	314,760	122,845	-	191,915	보상 협의 지연
	가창 단산리 (315번지선) 농로 확포장공사	197,446	15,664	15,252	166,530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사업제외
	하빈 봉촌1리 (11-1번지선 외 3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63,025	215,940	-	147,085	보상 협의 지연

□ 검토의견

민원으로 인한 노선의 재검토 및 사업의 취소, 보상협의의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상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는 등 내실있는 절차의 이행이 요구됨.

2)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장 선정 및 추진 철저

□ 농업시설사업 예산 이월(명시·사고)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기간미도래		보상협의지연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1	5,703	18	3,910	23	1,793	
명시이월	26	4,784	11	3,394	15	1,390	
사고이월	15	919	7	516	8	403	

농업시설사업예산 94건 20,491백만원 중 41건 5,703백만원이 영농기간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음.

□ 검토의견

사업장별 여건과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예산을 당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상협의를 가장 어려운 기존도로 접속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선행된 후 전 구간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함.

3)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징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102,327	1,082,994	1,696	17,698	1,022,057	1,005,601	1,045	15,411	941,582	926,389	1,488	15,193
지방세수입	200,397	190,000	1,257	9,139	176,072	167,330	620	8,122	163,075	155,060	934	8,016
세외수입	56,527	47,529	439	8,558	52,456	44,741	425	7,289	56,904	49,726	553	7,178
지방교부세	164,537	164,537	0	0	145,911	145,911	0	0	147,676	147,676	0	0
조정교부금	60,119	60,119	0	0	74,417	74,417	0	0	55,282	55,282	0	0
보조금	295,907	295,906	0	0	233,811	233,811	0	0	206,979	206,979	0	0
보전수입 및기타	324,840	324,840	0	0	339,389	339,389	0	0	311,666	311,666	0	0

최근3년간 자체재원 미수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의 원천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시효완성 등으로 불납 결손 처리되고 있음.

□ 검토의견

달성군의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지 않고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조세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일실을 방지하여야 함.

4)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 최근 3년 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율 (D/B)
2019	37,557,243	56,710,459	47,711,751	8,558,686	15.1%
2018	31,766,705	52,456,359	44,741,949	7,289,278	13.9%
2017	28,174,924	56,904,257	49,726,298	6,624,515	11.6%

최근 3년간 징수결정 내용은 일정하나 미수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징수과로 이관된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과목별 구분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이관된 미수납액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사업수입	기 타
2019	8,558	5,023(58.7%)	791(9.2%)	680(8.0%)	741(8.7%)	1,323(15.4%)
2018	7,289	4,573(62.8%)	534(7.3%)	691(9.5%)	410(5.6%)	1,081(14.8%)
2017	6,624	4,520(68.2%)	188(2.9%)	589(8.9%)	73(1.1%)	1,254(18.9%)

□ 검토의견

미수납액 중 과태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목별 징수 방법을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채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가 요구됨.

5) 세외수입 세입예산관리 철저

□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이 미수립된 징수결정액 등 현황(1억초과)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자치행정과	0	293,942	293,942	0
일자리경제과	126,720	324,944	324,944	0
공원녹지과	0	327,122	327,122	0
복지정책과	0	209,431	209,431	0
생활보장과	0	275,275	0	275,275
희망지원과	0	246,248	246,248	0
건 설 과	0	6,024,378	5,735,821	288,557
교육청소년과	0	116,091	116,084	7
보 건 과	0	103,238	103,238	0

경상적 또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검토의견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징수결정·수납할 것이 예상되므로 세입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매년 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의 적합성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명	2018		2019		B/A (%)	지표 적합성	목표 타당성	원인 분석
		목표	실적	목표 (A)	실적 (B)				
기획 예산실	달성군 인구증가수(명)	5000	7168	4000	5997	150	만족	미흡	만족
법무 감사실	승소율(%)	50	91	55	82	149	만족	미흡	만족
자치 행정과	이장자녀 장학금 수상자(명)	5	2	5	3	60	미흡	미흡	만족
징수과	군세 체납 징수율(%)	38	63	38	51	134	만족	미흡	만족
종합 민원과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실적(회)	13	18	14	24	170	만족	미흡	만족
일자리 경제과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회)	86	95	86	33	38	미흡	만족	만족
농업 정책과	농기계 구입지원(대)	153	211	153	279	194	만족	미흡	만족
청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율(%)	30	33	30	54	180	만족	만족	만족
청소 위생과	공중위생 음악·게임업소 지도점검률(%)	10	15	50	94	188	만족	만족	만족
공원 녹지과	공원, 유원지 조성(개소수)	2	3	2	1	50	미흡	미흡	만족
공원 녹지과	숲가꾸기 및 조림 실적(ha)	1.43	1.43	1.43	7.0	489	만족	만족	미흡
복지 정책과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수혜율(%)	100	95	100	95	95	만족	미흡	만족
복지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개소)	2	6	13	6	46	만족	미흡	만족
교통과	주차장 신규 설치 실적(면)	30	58	30	266	866	만족	미흡	미흡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건수(건)	115	55	115	65	57	만족	미흡	만족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진도율(%)	100	90	100	70	70	미흡	미흡	만족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율	90	66.6	80	59	74	만족	미흡	만족
문화 체육과	체육시설 사용료 실적(백만원)	1102	1567	1110	2291	206	만족	미흡	미흡
보건과	보건의료 진료환자수(명)	82349	60113	82341	37450	45	만족	미흡	만족

□ 검토의견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 비중과 사업 중요성이 높은 단위 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구체적 과정지표를 추가 설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의 선정 시 전년도에 초과 달성하였거나 미달성을 하였을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당해연도 목표 설정 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함.

성과결과 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전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 설정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보고 작성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 제출 전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관한 외부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출일자 : 2020년 6월 12일

3. 제출이유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4항(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4항(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예비비)

5. 예비비 사용 지출 결정 및 집행 현황

1) 회계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 고
계	11,807,933	1,809,708	1,696,288	113,419	
일반예비비	4,600,000	1,236,708	1,131,400	105,308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사용 가능 (보조금, 업무추진비, 의회 삭감경비 제외) ▸ 편성한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207,933	573,000	564,888	8,111	▸ 재해·재난목적으로 사용 가능 ▸ 편성한도 : 없음

※ 전체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내역 없음

2)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관 련 서 부	예비비 배정과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적 요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809,708	1,696,289	0	113,419	
보건과	소 계			28,600	27,040	0	1,56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2019. 1.8.	28,600	27,040	0	1,560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
법무감 사실	소 계			900,000	900,000	0	0	
	배상금등	305-01	2019. 4.5.	900,000	900,000	0	0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지출 (성서5차산단 개발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
농업 정책과	소 계			161,580	57,832		103,748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2019. 9.23.	78,480	25,808	0	52,672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사무 관리비	201-01	2019. 9.23.	46,100	18,196	0	27,904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공공 운영비	201-02	2019. 9.23.	6,000	848	0	5,152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재료비	206-01	2019. 9.23.	22,000	10,2800	0	11,720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시설비	401-01	2019. 9.23.	9,000	2,700		6,300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관 련 서	예비비 배정과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적 요
	편성목	통계목						
안전 방재과	소 계			619,528	619,528	0	0	
	시설비	401-01	2019. 10.25.	116,000	116,000	0	0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시설비	401-01	2019. 10.25.	357,000	357,000	0	0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시설비	401-01	2019. 11.15.	146,528	146,528	0	0	다사서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문화 체육과	소 계			100,000	91,888		8,112	
	시설비	401-01	2019. 10.25.	100,000	91,888	0	8,112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6. 검토의견

- 예비비 예산현액은 118억 8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8억 1천만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16억 9천 6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천 3백만원임. 전체 예비비는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없음.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일반회계의 1/100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재해·재난 관련으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1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3. 제안사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지원체계, 시행계획수립 등 (안 제3조 ~ 제5조)
- 양성평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복지, 정착지원 (안 제6조 ~ 제10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여성농업인육성법 제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지원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0조 : 양성평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복지,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 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창업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
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기존 가창면 용계4리(대한중석아파트)는 대구택 사택으로 이용되었으나 5. 31. 철거 완료되어 주민이 없는 상태이므로 용계2리로 통·폐합하고, 용계1리 내 용계아파트를 별도의 행정리(용계4리)로 분리
-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예정('20. 7월)으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정수 및 반수의 증가
 - 국가산단 줍파크(596세대, 7개반)
 - 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527세대, 6개반)
- 대구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구지면 내1리가 대부분 산단부지로 편입되어 내1리와 내2리를 내리로 통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창면의 용계4리를 용계2리로 통 폐합하고, 용계1리 내 용계아파트를 용계4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4개반을 폐지하며

- 구지면 준공예정인 국가산단 줍파크를 응암 6리로 분리. 반도유보라 아이비 파크2.0을 응암 7리로 각각 분리하여, 13반을 신설하고, 내1리와 내2리를 내리로 통합함과 동시에 4개반을 폐지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음.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가창면 용계4리(대한중석아파트)는 대구택 사택으로 이용되었으나 5. 31. 철거 완료되어 주민이 없는 상태이므로 용계2리로 통·폐합하고, 용계1리 내 용계아파트를 별도의 행정리(용계4리)로 분리하고,
-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예정('20. 7월)으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정수 및 반수의 증가
 - 국가산단 줍파크(596세대, 7개 반)
 - 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527세대, 6개 반)
- 대구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구지면 내1리가 대부분 산단부지로 편입되어 내1리와 내2리를 내리로 통합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가창면의 용계4리를 용계2리로 통·폐합하고, 용계1리 내 용계아파트를 용계4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4개반을 폐지 하는 사항과

- 구지면 준공예정인 국가산단 줍파크를 응암 6리로 분리, 반도유보라 아이비 파크2.0을 응암 7리로 각각 분리하여, 13반을 신설에 관한 사항
- 내1리, 내2리를 내리로 통합함과 동시에 4개반을 폐지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이장 정수) 중 구지면란 및 구지면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구지면	법정리명 창 리	이장 정수 4	행정리명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1	화산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정 리	1	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30	30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가창면의 용계1리 반란의 제7반~제9반을 삭제한다.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가창면의 용계2리 제3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9 ~ 239, 245, 447, 565-6, 565-80 ~ 82, 572-4
--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용계4리 제1반~제3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계4리	제 1 반	565-30 (용계아파트) 1동 111호~156호
	2	565-30 (용계아파트) 2동 211호~256호
	3	565-30 (용계아파트) 3동 311호~356호, 5동 511호~540호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구지면란의 응암5리란 다음에 응암6리, 응암7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반	구 역
응암6리	제 1 반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1동 201호~2504호
	2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2동 201호~2302호
	3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3동 201호~2502호
	4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4동 201호~2504호
	5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5동 201호~2404호
	6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6동 201호~2502호
	7	1252번지(국가산단 줍파크) 107동 201호~2304호

리	반	구역
응암7리	제 1 반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1동 102호~2504호
	2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2동 102호~2504호
	3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3동 102호~2504호
	4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4동 201호~2404호
	5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5동 201호~2402호
	6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106동 101호~2404호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구지면의 내1리·내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리	제 1 반	75 ~ 855-5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5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1	화산리		화산리	1	화산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구지면 소계	15	30	30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가창면	용계1리	제1반	12~28, 60~122	가창면	용계1리	제1반	12~28, 60~122
		2	75~94			2	75~94
		3	83~95			3	83~95
		4	33-95, 565-6-565-74 (33-20, 34-2 제외)			4	33-95, 565-6-565-74 (33-20, 34-2 제외)
		5	42~49			5	42~49
		6	86~198			6	86~198
		7	565-30(용계아파트) 1동 111호~156호			<삭제>	
		8	565-30(용계아파트) 2동 211호~256호			<삭제>	
		9	565-30(용계아파트) 3동 311호~356호, 5동 511호~540호			<삭제>	
	용계2리	제1반	산18-2, 444-4~447-7, 549-1~550, 539-3~551		용계2리	제1반	산18-2, 444-4~447-7, 549-1~550, 539-3~551
		2	490~546			2	490~546
		3	199~239, 565-6, 565-80~82			3	199~239, 245, 477 565-6, 565-80~82, 572-4
	용계4리	제1반	245(대한중석아파트 신동) 101~409호		용계4리	제1반	565-30(용계아파트) 1동 111호~156호
		2	245, 477, 572-4 (대한중석아파트 101동) 101~507호			2	565-30(용계아파트) 2동 211호~256호
		3	245, 477, 572-4 (대한중석아파트 102동) 101~509호				
		4	245, 477, 572-4 (대한중석아파트 103동) 101~511호			3	565-30(용계아파트) 3동 311호~356호, 5동 511호~540호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구지면	〈신설〉			구지면	응암6리	제1반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1동 201호~2504호
						2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2동 201호~2302호
						3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3동 201호~2502호
						4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4동 201호~2504호
						5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5동 201호~2404호
						6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6동 201호~2502호
						7	1252번지(국가산단 줌파크) 107동 201호~2304호
	〈신설〉				응암7리	제1반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1동 102호~2504호
						2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2동 102호~2504호
						3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3동 102호~2504호
						4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4동 201호~2404호
						5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5동 201호~2402호
						6	1251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106동 101호~2404호
	내1리	제1반	78~90				
		2	161 ~ 280				
	내2리	제1반	84~360				
		2	365~612				
		3	638~882				
					내리	제1반	75 ~ 855-5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참고 2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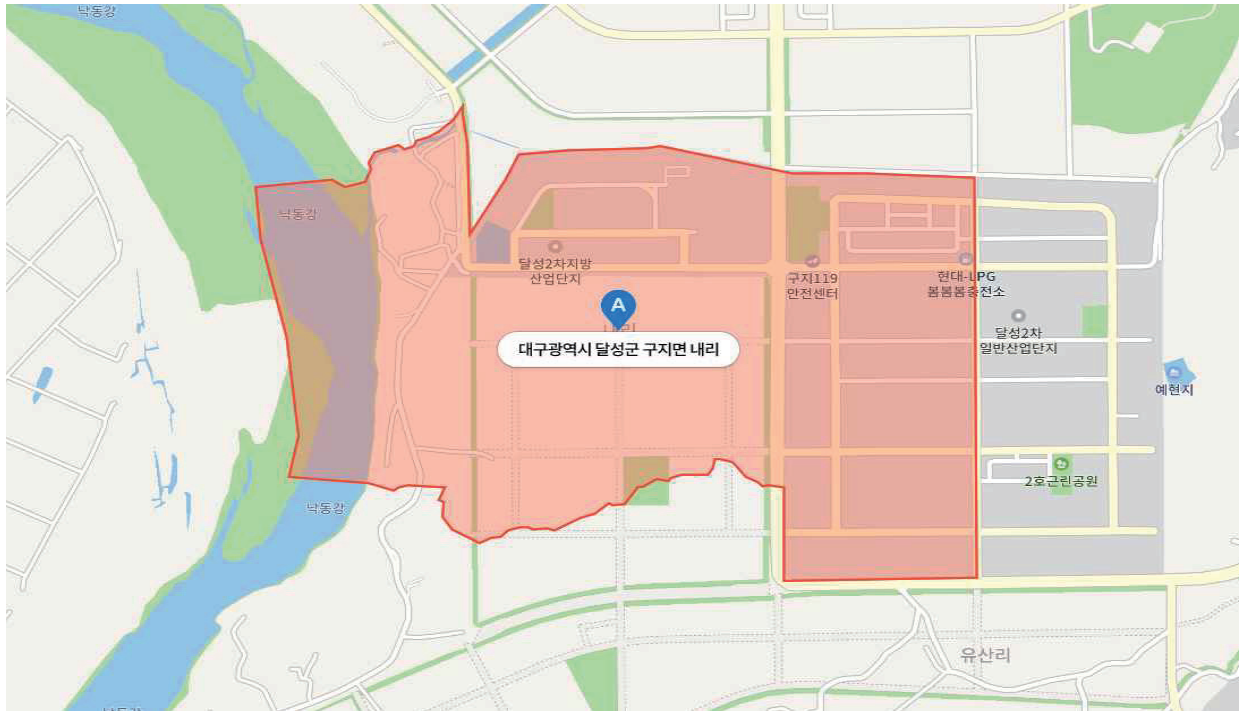
□ 가창면 용계4리



□ 구지면 응암 6, 7리



□ 구지면 내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8만원)을 삭제하고 시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 사업에 ‘월 8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 임을 감안하여 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3조)

5.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8만원)을 삭제하고 시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 지원 사업에 ‘월 8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임을 감안하여 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 ----- ----- -----
1.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단,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세부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11조 ‘월 5만원’ 으로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5.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세부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1조 ‘월 5만원’ 으로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u>국가보훈대상자에게</u>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 <u>국가보훈대상자에게</u> <u>보훈예우수당</u> ----- ----- ----- ----- ----- ----- ----- ----- -----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2019. 6. 12. 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포상금 신고 적용범위 및 신고사항, 방법, 신고사항 처리(안 제3조~ 제6조)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결정, 지급신청(안 제7조~ 제10조)
- 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지급 제외(안 제11조 ~ 제12조)
- 포상금의 환수(안 제13조)
- 신고자 보호(안 제14조)

5.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53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시행령 제27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 :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제6조 : 포상금 신고 적용범위 및 신고사항, 방법,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제10조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결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12조 : 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복지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서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에서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란 주기 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부정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부정수급을 한 사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도록 도운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5. “신고인”이란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신고인의 신고 사항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그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

급여법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3.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4.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4조(신고사항) 신고인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2.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신규로 발생한 소득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하는 행위
3.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5조(신고방법) ①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 문서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수급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사항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제5조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째순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같은 신고대상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항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군수는 그 신고인들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지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4.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가 만료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법령 등의 위반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달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자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신고 대상 유형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 + (500만원 초과 × 20/100))
	◦ 1,000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천만원
※ 공통기준 ◦ 예산 범위에서 지급 ◦ 환수결정금액은 환수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 천원 미만은 절사함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일					처리기한	
접수번호					60 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작성 가능					
증빙 서류	1. 2. 3. 4.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포상금 결정 통지서

1.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연락처			

2.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번호	
피신고인			
신고내용			

3. 결정내용

신고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개요	신고번호			신고(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 액 :) ☐ 없음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13조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자가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 생활보장과

접수담당자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 생활보장과

접수담당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인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 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신고 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 2. 신고 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1.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국가재정법」

-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고 2

「사회보장급여 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6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3.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4.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2016년 4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6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방문객수가 저조한 월요일(他요일 평균대비 60% 이하)을 전시와 체험을 하는 유사시설의 사례와 같이 휴관하고자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우호관의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 을 추가(안 제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방문객수가 저조한 월요일(他요일 평균대비 60% 이하)을 전시와 체험을 하는 유사시설의 사례와 같이 휴관하고자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우호관의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하는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u>매년 1월 1일</u>	1. <u>매주 월요일</u>
2. <u>설날 및 추석 연휴</u>	2. <u>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